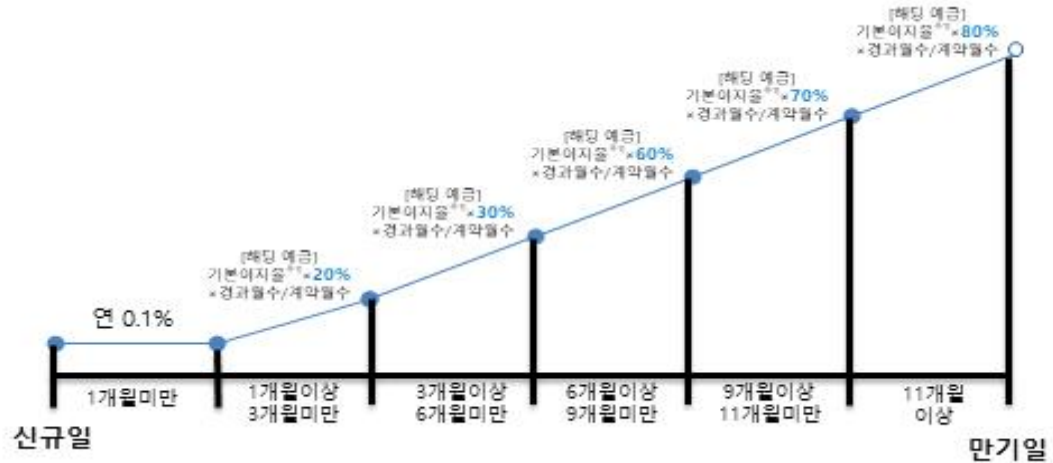


주1)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이자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 특별 중도해지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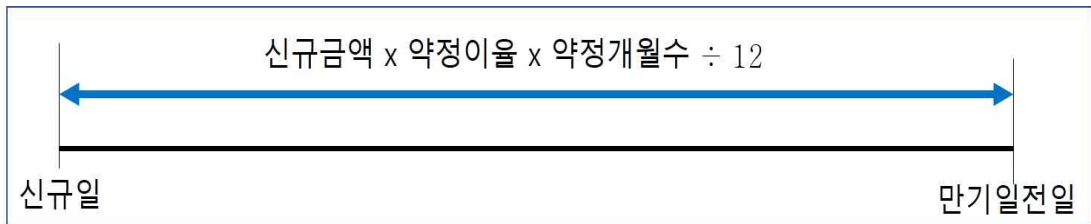
신규(재예치) 후 경과기간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 미만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가입 및 재예치 당시 3개월 금리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가입 및 재예치 당시 6개월 금리
1년 이상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고시이자율

특별 중도해지 사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로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1)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① 가입자 본인
 - ② 가입자의 배우자
 - ③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라)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마) 가입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그 밖에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수탁자의 사임 (마) 가입자의 사망 (4)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 (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5) 제주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이전 사유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만기후이율	예금일(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 ÷ 12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재예치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퇴직계좌에 편입된 정기에금은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신규 됩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 (IRP)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P)에 편입된 정기에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7월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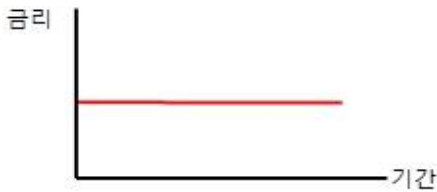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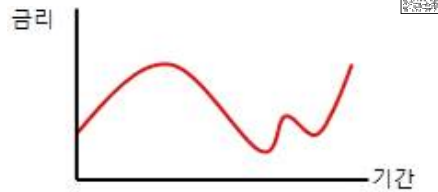
	자동으로 재예치 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및 질권설정, 담보제공 : 불가	
기타내용	※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신규, 지급, 해지 등의 업무 수행 (통장 미사용, 단말 거래나 인터넷 거래가 불가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비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3 계약 해지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 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④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중도해지 방법 및 절차 : 영업점 방문 신청
 - 일부해지 :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 해지가 가능합니다.
 - ※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 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예금 지급의 경우에는 전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4 유의 사항

- 기타 유의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 형태		
특징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장점	▶ 시장금리 하락기 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 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단점	▶ 시장금리 상승기 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 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퇴직연금 정기예금] 요약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

최고금리	연 %	'24.07.10일 현재 5년제 해당 퇴직연금 정기예금 기준 (자세한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가입기간	3개월제, 6개월제, 1년제, 2년제, 3년제, 5년제		
최저가입금액	1원 이상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재예치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DB)퇴직계좌에 편입된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	
	확정기여형 (DC) 개인형퇴직 계좌(IRP)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P)에 편입된 정기예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다만,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선정하지 않는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7월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	
일부해지	○		
예금담보대출	x		
예금자보호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점은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이율	최저 연 0.1% ※ 중도해지는 영업점 방문 필요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계약기간별 적용이율로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
예금만기	만기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능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